

#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홍식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이동우 의원 등 7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3년 11월 16일

나. 회부일자 : 2023년 11월 17일

3. 제안이유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행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권한의 위임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기간 확대(안 제4조)
  - (기존) 3년 → (개정) 5년
-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 도지사 권한의 위임 규정 신설(안 제7조)

5. 검토내용

- 본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안 제4조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하려는 것으로,
  -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발급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시설투자를 하게 되는데, 대다수 시도가 대행기간을 5년으로 삼고 있는 데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행기간이 짧아 사업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 반대로 인구가 적은 도 내 시군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자가 적어 3년마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를 지정하는 데 부담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 고**

우리 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중 15개 시도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기간이 5년임.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대행기간	5년	5년	5년	5년	5년	5년	5년	5년
시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대행기간	5년	5년	5년	5년	5년	5년	5년	<u>3년</u>

- 안 제4조의2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산정 주체, 대행자의 산출 근거 제출 의무, 도지사의 재산출 요구 권한 등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 타시도의 경우 조례에서 시장·도지사 또는 대행자가 자동차등록 번호판 발급수수료를 산정하고, 산출근거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 대행자를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산정주체로 정하는 경우, 시장·도지사가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나,

- 우리 도의 경우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산정주체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 고**

안 제4조의2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수수료 산정주체, 산출근거 제출의무, 재산출 요구규정 유무에 대한 타시도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수수료 산정주체	대행자	대행자	대행자	×	×	대행자	×	대행자
산출근거 제출의무	○	×	○	×	×	○	×	○
재산출 요구규정유무	○	○	○	×	×	○	×	○
시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수수료 산정주체	대행자	대행자	대행자	대행자	대행자	×	대행자	대행자
산출근거 제출의무	○	○	○	○	○	×	○	○
재산출 요구규정유무	○	○	○	○	○	×	○	○

- 안 제7조는 「자동차관리법」 제7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13호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대행자의 선정기준, 대행기간,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대행자의 변경신고에 관한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그 밖에 조문 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안 예고('23. 11. 21. ~ '23. 11. 27.)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함.

## 6. 검토의견

-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대행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권한의 위임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조례가 개정되어 시행되면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는 만큼 해당 개정 내용에 관하여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